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90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민형배 · 조인철 · 김우영
조계원 · 박지원 · 김문수
김용민 · 최혁진 · 윤종오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지급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에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한부모 가정과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법률·추심 절차 이행 여부 등 제도 취지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가정 다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독일·스웨덴 등 주요 국가는 미지급 사실만으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 상태나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과 법률지원·채권추심

관련 요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21조의6,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 미이행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를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

정”을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출입국·병무·교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u>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u>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삭 제>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삭 제>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 중인 경우

② ~ ④ (생 략)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
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
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
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
된 경우

③ ~ ⑤ (생 략)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
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
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
한 조사) ① -----

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 미이행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생활환경-----

② -----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관련 자료-----

③ (현행과 같음)

④ -----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 · 국세 · 지방세, 토지 · 건물,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 · 병무 · 보호급여 · 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금융·출입국·병무·교정---

⑤ (현행과 같음)